



## 서울북부지방법원

### 제 3 형 사 부

### 판 결

|         |                  |                               |
|---------|------------------|-------------------------------|
| 사 건     | 2025노1283        | 저작권법위반                        |
| 피 고 인   | A                |                               |
| 항 소 인   | 쌍방               |                               |
| 검 사     | 정동현(기소), 유연우(공판) |                               |
| 원 심 판 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5. 7. 23. 선고 2025고단1171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6. 6. 26.     |                               |

###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이 유

#### 1. 항소이유의 요지

#####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나. 검사

##### 1) 사실오인(무죄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고, 피고인은 이미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같은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민·형사상 제재를 받았으며, 2021. 7. 2.경 '침해사실 시인 및 재발방지 각서'까지 작성하였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다시 저작재산권 침해물을 판매하고자 위 각서를 임의로 수정하여 N에 제출한 사실도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영리를 취하기 위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고의로 저작재산권 침해물을 판매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 2) 양형부당(유죄부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 'D', 'E', 'F', 'G' 등 다수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H' 및 'I' 등의 판매자(사업자) 이름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42번 내지 58번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J 등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K 등 아티스트의 사진 등이 새겨진 가품 물건(굿즈)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C'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복제, 전시, 배포함으로써 침해하였다.

###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물품 등을 판매하기 위해서 게시한 사실이 없고,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던 것으로서 삭제할 권한이 없어 삭제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고소인'으로부터 2023. 7.경 고소를 당한 이후 저작권침해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범죄일람표 순번 42번 내지 58번 기재 상품의 판매페이지는 삭제권한이 없어서 삭제하지 못한 것이라거나 삭제를 하였음에도 플랫폼의 시스템 변경으로 상품삭제가 반영되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노출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F 고객센터 직원과의 녹취록에 나오는 통화내용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일부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② 증거로 제출된 범죄일람표 순번 42번 내지 58번 기재 상품의 판매페이지는 해당 날짜에 해당 플랫폼에 판매페이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일 뿐 피고인이 해당 날짜에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판매페이지를 게시하였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닌 점, ③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을 상대로 판매페이지 삭제에 등에 관한 피고인 주장의 진위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에 플랫폼에 게시하였던 판매페이지가 삭제되지 못한 채 일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42번 내지 58번 기재 각 저작권법위반의 범행일시에 저작권법위반의 고의를 가지고, 판매페이지를 게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함께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F 고객센터 직원과의 2024. 8. 1.자 녹취록에 의하면, 해당 직원이 전산을 통해 직접 관련 상품의 판매 중지를 진행하여 상품 정보를 수정하였음에도, 계속 판매페이지에는 '판매 가능'으로 표시된 것으로 보이는 점(공판기록 38, 39쪽), ② 실제로 2023. 7.경 이후부터 관련 상품 판매에 따른 매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공판기록 23쪽)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3.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명 아이돌의 사진이 새겨진 상품 등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게시하여 저작권권을 침해한 것으로, 게시기간과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저작권자 측으로부터 저작권침해 중단요구를 받아 재발방지각서까지 작성하였음에도 상호를 변경하고 범행을 지속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큰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과 검사가 이 법원에서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에 이



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명산      \_\_\_\_\_

                 판사      박지은      \_\_\_\_\_

                 판사      김성은      \_\_\_\_\_